

차의과학대학교 대학평의회		2018년도 제9차 회의록	
일 시	2018. 07. 27(금) 11:00 ~ 12:00	장 소	CBC B113호
참석의원	정광희 의원, 김진경 의원, 김재환 의원, 임지영 의원, 황태선 의원, 박재범 의원, 오일숙 의원, 최근영 의원, 김준혁 의원, 배진건 의원, 장용석 의원		
불참의원			
간 사	강창호 기획실장, 경희수 기획실 주임		

I. 안 건

- 차의과학대학교 제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
- 경영대학원 CHA Bio MBA 계약학과(석사과정) 등록금 책정 자문
- 일반대학원 전략경영학과 계약학과(박사과정) 등록금 책정 자문
- 2018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 운영 자문

II. 회의내용

- 정광희 의장(이하 의장)이 의원정수 11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함
- 의장이 차의과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제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 경영대학원 CHA Bio MBA 계약학과(석사과정) 및 일반대학원 전략경영학과 계약학과(박사과정) 등록금 책정 자문과 2018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 운영 자문과 관련된 안건을 상정하고 강창호 기획실장(이하 기획실장)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함
- 기획실장이 배포된 유인물을 토대로 제대학원 학칙 개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세히 설명함
- 제12조(등록), 제17조(학위과정 재적연한), 제18조(학기), 제19조(수업일수), 제23조(신청 가능 학점), 제26조(수업시간), 제29조(교과목), 제57조(학위과정 수료), 제61조(학우수여요건)의 학칙에 대하여 경영대학원의 경우 그 세칙으로 정하고자 함을 설명하고 제대학원의 세칙은 다음의 표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 (경영대학원 학사운영) ① 학칙 제12조 5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등록은 4학기로 한다. 2. 학기의 구분은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로 한다. 3. 여름학과 겨울학기는 1/2학기로 간주한다. 4. 수료자격에 필요한 학점을 조기 이수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기간을 3학기로 단축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 학칙 제18조 3항에 따른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봄학기 : 3월 1일부터 정규수업 종료시까지(16주 이내) 2. 여름학기 : 봄학기 종료 후 2주 이내부터 정규수업 종료시까지(7주 이내) 3. 가을학기 : 9월 1일부터 정규수업 종료시까지(16주 이내) 4. 겨울학기 : 가을학기 종료 후 2주 이내부터 정규수업 종료시까지(7주 이내) ③ 학칙 제19조 4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15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 ④ 학칙 제23조 5항에 따른 신청가능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봄학기, 가을학기 : 12학점 이내 2. 여름학기, 겨울학기 : 6학점 이내 ⑤ 학칙 제26조 3항에 따른 경영대학원 수업시간은 오후 6시 이후 또는 주말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학칙 제29조 8항에 따른 교과목은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 전공심화과목으로 구분한다. ⑦ 학칙 제57조 2항에 따른 수료요건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등록을 모두 수료한 자 2. 최소한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3. 학과가 정한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한 자 4. 이수학점의 총평량 평균은 3.0(B⁺)이상인 자 ⑧ 학칙 제61조 2항의 학위수여요건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1. 제6항의 학위과정 수료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2. 프로젝트 보고서를 제출한 자
1. 이 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2. 이 세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략> 16. 이 세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세칙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이 세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세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략> 16. ~ 18. <좌동> 19. 이 세칙은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임지영 의원이 개정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기획실장이 경영대학원은 비즈니스 학과로서 학생들이 실무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학과 운영 특성상 제대학원 학칙 개정이 필요함을 피력함
- 김진경 의원이 경영대학원의 학과 특성상 운영 방식이 타 특수대학원과 상이한 점은 이해가 가나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만큼 중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함
- 기획실장이 김진경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고 경영대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경영대학원 및 대학원 행정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학과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설명함
- 이어 기획실장이 배포된 유인물을 토대로 경영대학원 CHA Bio MBA 계약학과(석사과정) 및 일반대학원 전략경영학과 계약학과(박사과정) 등록금 책정 자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함
- 석사과정의 경우 수업 연한은 1년에 총 32학점으로 매주 토요일 운영되며 Bio-경영, Bio-회계, Bio-재무, Bio-인적자원관리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할 계획임
- 박사과정은 수업연한이 1년 6개월에 총 36학점으로 매 학기 12학점 이내로 운영할 계획이며, 전략재무관리, 전략재무회계, 전략마케팅, 전략인사관리, 전략경영론, 경영데이터 분석관리론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학습할 계획임을 설명함
- 석사과정 입학금은 748,000원으로 2018학년도 특수대학원의 타 대학원과 동일하게 책정하고 수업료는 한 학기당 5,313,000원으로 특수대학원의 타 대학원 인문사회 계열보다 조금 낮게 책정하여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였음을 설명함
- 박사과정은 500,000원, 수업료는 한 학기에 6,000,000원으로, 수업료가 석사과정보다 687,000원 높으나 학점수가 4학점 더 많음 점, 6개월이 추가적으로 운영되는 점, 심화적인 전공 학습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였으며, 대신 입학금의 경우 수업료가 높기 때문에 메디컬뷰티산업학과(계약학과/박사과정)와 동일하게 500,000원선으로 책정하기로 함을 설명함
- 김진경 의원이 학교부담액, 학생부담액, 기업부담액에 대하여 질의함
- 기획실장이 학교부담액은 수업료의 25%이며 이는 장학금 처리할 예정이며, 석사과정

- 은 학생부담액이 총 5,500,000원 수준이며, 박사과정은 학생부담액이 총 6,250,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은 등록금의 50% 이상을 부담할 예정임을 설명함
- 김준혁 의원이 2018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함
 - 최근영 과장이 2018학년도 2학기 교과목 개설 중 집중이수 과목 및 캡스톤 디자인 과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세히 설명함
 - 집중이수 과목 중 바이오공학과와 “실험통계학 및 생물정보학 실험”, “줄기세포공학 실험”의 과목을 토요일 1-9교시, 6주 수업, 상하반기로 나누어 수업하고자 하며, 이는 이들 과목의 특성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거나 다양한 실험기기 이용과 실험기법 학습이 가능한 곳에서 수업이 가능한 수업으로 이론과 실습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함으로 단기간에 종일 수업으로 개설하고자 함을 설명함
 - 아울러 “면역항체공학 실험”과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1-9교시, 6주 수업, 상반기 수업으로 진행하여 학습성과 및 수행준거 달성을 위해 과제별로 집중 강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집중 이수과목으로 진행하고자 함을 설명함
 - 캡스톤 디자인 과목과 같은 경우 바이오공학과에 “바이오 캡스톤디자인 III”과 “IP 캡스톤디자인 I”를 개설하고자 함을 설명함
 - 이는 기존에 개설된 “바이오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진행하면서 IP(특허권 및 저작권)에 특화된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에 대하여 학생들의 요구가 발생하여 개설하게 되었음을 부연 설명함
 - 아울러 식품생명공학과에는 “발효식품과 건강기능성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개설하여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창의성과 실무능력을 동시에 배양하고자 함을 설명함
 - 김준혁 의원이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어 교과목에 반영이 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력 제고 및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함
 - 의장이 상정된 안전에 대한 의견 없음을 확인한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기획실장에게 대학평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회의결과)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설명하다.
 - 기획실장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2의 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공개할 것이라고 답변하다.

III. 폐회선언

○ 의장은 기타 논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

확 인	의 원	서 명	의 원	서 명
	정광희	정광희	김재환	김재환
	김진경	김진경	황태선	황태선
	임지영	임지영	박재범	박재범
	오일숙	오일숙	최근영	최근영
	김준혁	김준혁	배진건	배진건
	장용석	장용석		